



공사시 공사인부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장치를 하여야 하는데 3층 건물 외벽도장공사시 안전장치는 달비계와이어로프만 설치(타면)되는지 아니면 안전망까지 설치하여야 하는지오. 또한, 법으로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요.



1.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39조(추락의 방지)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2미터이상 인 장소에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추락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위 규정에 의한 작업발판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방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 작업 내용이 기존 건물의 외벽을 도장하는 공사로 작업특성상 작업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치는 것이 곤란하여 달비계를 설치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달비계의 구조가 동 규칙 제380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고 조립·해체 및 변경 등의 작업시에도 동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는 등 당해 작업과 관련하여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였다면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사금액 1000억 이상의 대형 공사로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가 분리 발주되어 통신공사(50억이상~100억미만)를 수행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계약금액이 100억 미만으로 전담 안전관리자 없이 재해예방 기관으로 부터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고 있으나 대형 공사장인 관계로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가 어려워 안전관리보조원을 채용해 안전순찰 및 시설관리, 일일교육을 전담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원의 인건비를 전액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의 규정에 의하면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을 겸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보조원이 귀 공사현장에서 안전순찰, 안전시설관리, 일일교육 등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을 할 경우 동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간접비용의 산출기준에 관한 자료는 무엇이 있는지요?



하인리히(H.W Heinrich) 이론에 의한 간접비용 계산방식을 우리 부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이 이론에 의하면 산업재해로 인한 간접비용은 직접비용의 4배입니다. 여기서 직접비용은 산재보상금액의 총액을 말하며 간접비용은 주로 재해로 인한 본인과 타인의 시간 손실, 사고로 인한 재산 손실, 생산지연·중단에 따르는 손실 등을 말합니다.



당사업장은 PSM대상 업체로서 대상설비일체를 임대하여 임차법인이(설비운영사업주) 운영하고 있다면,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의무자는 설비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있는지 아니면 설비운영사업주인 임차인에게 있는지요.



공정안전관리(PSM)제도는 유해·위험설비의 설계단계 및 사용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빌굴·제거하고 당해 설비의 고유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주”라 함은 보유방법과 무관하게 현재 당해 설비를 실제 운영하는 사업주를 말합니다.

참고로, 대여하는 설비가 같은법 제3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 기타 필요한 정비를 하는 등 “대여자의 조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건물 및 구조물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에 관한 협조가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3항, 동 시행규칙 120조 4항 1호
2. 질의내용

- 지상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공사기간, 공사금액, 개조범위 등 세부사항이 없어 단순 보수공사도 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건설·개조 또는 해체의 범위를 규정하지 않아 업무처리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상높이 31m 이상인 기존 연돌의 내부에 내화 벽돌 보호를 위한 보강타일을 부착 및 외부 도장을 한다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1.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제출하여야 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당해 사업과 관계 있는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작업 수행내용이 제출대상 건축물의 설치 및 해체 또는 주요부분의 변경이 아닌 기존 건축물의 내부 보호를 위한 보강타일 부착 및 외부 도장 작업에 해당하는 정도라면 위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